

주간농업·농촌동향 **한·인도 CEPA 농림수산분야 주요내용**

(미래정책연구실, 2009.08.10)

□ **한·인도 CEPA 추진 경과**

- 이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은 우리나라의 여섯 번째 FTA임.
 - *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 '06년 2월 양국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래 총 12차례 협상, 3차례 회기 간 회의를 통해 쟁점 논의
 - 작년 9월 제12차 협상(차관급 협상)에서 핵심쟁점에 대해 합의하여 실질적 타결을 이룬 후에 금년 2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양국 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한 바 있음.
 - 2009년 8월 7일 정식 서명
- 앞으로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한·인도 CEPA 협정의 발효를 추진할 예정임.

□ **농림수산 분야 주요내용**

- 양국 모두 농림수산 분야의 민감성을 인정,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
- 우리나라는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중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감귤, 사과, 배 등 총 44.8%에 상당하는 65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
 - 망고, 후추 등 299개 품목은 민감 유형으로 분류하여 8년간 관세의 50%를 낮추기로 하는 등 다양한 예외를 확보함.
 - 대두박, 사료용 종자 등 국내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단기간 관세 폐지 또는 즉시 양허 유형에 분류

- 수산물은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목(총 407개 중 80개 품목, 19.7%)을 양허대상에서 제외
 - 이들 양허제외 품목의 수입 비중은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

- 임산물은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등 주요 목재류 24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
 -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판(MDF)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인도 측의 관세를 폐지기로 함.

- 인도 역시 대부분의 농림수산물을 낮은 수준으로 개방함.
 - 전체 농산물 1,460개 품목(HS 8단위 기준) 중 식용 유지류 및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이 많은 캐슈넛, 완두콩 등 40.3%를 양허대상에서 제외
 - 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함.

- 위생 및 검역 분야는 WTO ‘동·식물위생검역협정’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상의 회원국의 권리 및 의무를 기초로 양국간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

-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하여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전생산기준’을 적용, 제3국산 농산물의 우회수입을 차단하였고,
 -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
 - * 기국주의: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국적(國籍)을 가진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한·인도 농림수산물 양허 내용(총괄)

□ 우리측 농산물 양허

(단위 : 천\$)

양허유형	주요 품목	품목수	對인도 수입액
양허제외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인삼, 참깨, 양파, 마늘, 고추, 감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국화, 장미, 간장, 버터, 천연·인조꿀, 대추, 밤, 감, 호두, 은행, 잎담배, 필터담배 등	650 (44.8%)	30,780 (11.5%)
50%감축 (8년)	탈각 콩·녹두·팥, 망고, 휴면 튜립·백합, 후추, 순무, 배추, 종자용 귀리·수수·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두부, 기타 잎담배류 등	299 (20.6)	25,534 (9.5)
1~5%로 감축(8년)	시가·코담배 등 담배류, 사료용 호밀, 박하, 캐슈넛 등	31 (2.1)	1,516 (0.6)
8년철폐	장미, 조제겨자, 캐러멜, 추잉껌, 종우, 종돈, 산양, 꿀벌, 박류란, 밤·호도·잣나무, 아몬드, 사탕수수 당밀, 위스키 등	314 (21.6)	17,949 (6.7)
5년철폐	제분·종자용 밀, 호밀·옥수수 가루, 사탕무, 사탕수수, 기타 호밀·귀리 등	45 (3.1)	708 (0.3)
즉시철폐	사탕무·양파·파속·무 종자, 소·돼지 정액, 모피, 사료용 작물 종자, 대두박, 참나무·잔디 종자, 원피 등	112 (7.7)	191,564 (71.5)
계(HS 10단위)		1,451 (100)	268,051 (100)

* 수입액은 '04~'05 평균금액(천\$)

□ 인도측 농산물 양허

(단위 : 천\$)

양허유형	주요 품목	품목수	對한국 수입액
양허제외	유장, 버터, 감자, 토마토, 마늘, 양파, 고추, 생강,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생강, 캐슈넛, 아몬드, 옥수수, 쌀, 대두유, 주류, 담배류 등	588 (40.3%)	1,545 (31.5%)
50%감축 (8년)	닭고기, 시금치, 녹두, 팥, 망고, 딸기, 키위, 커피, 녹차, 홍차, 카레, 보리, 감자분, 인삼, 사탕무, 식물성유지 등	353 (24.2)	2,510 (51.2)
1~5%로 감축(8년)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인삼엑스, 인조꿀, 간장, 아이스크림, 카세인, 젤라틴 등	465 (31.8)	720 (14.7)
8년철폐	양모, 누에고치 웨이스트 등	23 (1.6)	30 (0.6)
즉시철폐	원피류, 생모피류 등	31 (2.1)	100 (2.0)
계(HS 8단위)		1,460	4,905

* 수입액은 '04~'05 평균금액

對인도 수입액 기준 상위품목 양허유형 (농산물 20개)

품 목 명	세율 (%)	대인도 수입액 (천 \$)	비중	양허유형
대두유 유박	1.8	128,127	47.8%	즉시철폐
유채씨 유박	0	40,747	15.2%	즉시철폐
옥수수(사료용)	328	21,357	8.0%	50%감축
밀(사료용)	1.8	14,432	5.3%	즉시철폐
참깨	630	11,883	4.4%	양허제외
기타(오일케익 및 유박)	5	11,768	4.4%	8년철폐
기타면	1	4,716	1.8%	즉시철폐
기타추출 올레오레진	8	4,169	1.6%	양허제외
피마자유와 그분획물	8	3,944	1.5%	양허제외
유채박	0	3,373	1.3%	즉시철폐
로우커스트두 등 점질물 및 디크너	8	2,339	0.9%	양허제외
수수(기타)	3	1,612	0.6%	8년철폐
기타 식물성생산물	3	1,428	0.5%	8년철폐
잎담배(황색종/주맥제거)	20	1,333	0.5%	양허제외
캐슈넛(탈각)	8	1,272	0.5%	양허제외
담배잎의 주맥	20	1,231	0.5%	양허제외
조제식료품기타	8	1,093	0.4%	양허제외
단백질함량 48%이상 기타 조제식료품	8	1,062	0.4%	50%감축
젤라틴	8	964	0.4%	양허제외
사탕수수당밀(기타)	3	851	0.4%	양허제외
소 계		257,701	96.1%	
농산물 총 수입액		268,051	100.0%	

* 관세 50%감축은 8년에 걸쳐 50%만 균등감축

* 대인도 수입액은 '04~'05년 평균금액